

2002 세입·세출 결산 승인(안)

의안 번호	2003-27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감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세입세출결산

(1) 일반회계

세입결산액	-----	246,376,945천원
세출결산액	-----	196,856,280천원
세계잉여금	-----	49,520,665천원

이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9,342,391천원 보조집행잔액 2,683,58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,494,687천원임.

(2) 특별회계

세입결산액	-----	44,338,460천원
세출결산액	-----	35,650,435천원
세계잉여금	-----	8,688,025천원

이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와 김제시 각 특별회계운영 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,736,65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0,72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,930,648천원임.

(3) 계속비결산

계속비 결산은 당초계속비로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.

(4) 채권 및 채무 결산

2001년도말 채권액은 5,133,873천원으로 2,569,030천원이 감소하여 2002년말 현재 잔액은 2,564,843천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말 55,840,515천원에서 6,307,466천원을 상환 및 조정하여 2002년말 잔액은 49,533,049천원임.

나. 재산 및 기금결산

(1) 공유재산

2001년말 현재액은 47,681,70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4,039,417천원, 보존재산이 7,338,084천원, 잡종재산이 6,304,204천원이며, 2002년 증가액은 13,146,347천원으로 2002년말 현재액은 60,828,052천원임.

(2) 기 금

전년말 현재액	-----	6,202,871천원
당해연도 발생액	-----	738,564천원
2002년말 현재액	-----	6,941,435천원

다. 금고의 결산

(1) 세 입

수 입 액	-----	312,488,409천원
과오납반납	-----	1,487,031천원
순수입액	-----	311,001,378천원

(2) 세 출

지 출 액	-----	253,257,812천원
반 납 액	-----	482,042천원
차 액	-----	252,775,770천원
잔 액	-----	58,225,608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조문

(1) 지방자치법

제125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2) 지방재정법

제41조(세입·세출결산의 작성)

세입·세출의 결산은 세입·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1. 세 입

- 가. 세입예산액
- 나. 징수결정액
- 다. 수 납 액
- 라. 불납결손액
- 마. 미 수 납 액

2. 세 출

- 가. 세출 예산액
- 나. 전년도이월액
- 다. 예비비사용액
- 라. 전용등증감액
- 마.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
- 바. 예산 현 액
- 사. 지 출 액
- 아. 다음연도 이월액
- 자. 불 용 액

(3)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38조(세입·세출결산의 제출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 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.

나. 기 타

별 책

- 2002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서
- 2002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서 부속서류
-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
-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

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

의안 번호	2003-3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 .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가. 예비비 지출

1)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	-----	4,454,570천원
2) 지출결정액	-----	3,988,063천원
3) 지출원인행위액	-----	3,861,384천원
4) 지출액	-----	3,830,701천원
5) 이월액	-----	13,860천원
6) 불용액	-----	143,502천원

나) 예비비 지출내용 :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참조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법 조문

1)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(예비비)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2002上水道公企業會計決算承認(案)

의안번호	2003-26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 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 받고자 함

2. 주요결산내역

가. 세입세출 결산

- 세입결산액(당기수입액)-- 21,774,373천원
- 세출결산액(당기지출액)-- 20,359,188천원
- 순세계잉여금----- 1,415,185천원

이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,027,259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87,926천원임

나. 지방채 결산

지방채무액은 전년말 19,286,150천원으로 2002년 차환채 발행액 10,223,500천원이 발생하여 총 29,509,650천원이며, 이 중 상환액이 1,982,850천원, 차환채 원금상환액이 10,223,500천원으로 2002년말 원금 잔액은 17,303,300천원임.

다. 가동설비자산

'01년도말 현재액은 34,941,408천원으로 년증가액이 1,527,440천원 발생되었으며, 감가상각충당금이 1,790,580천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가동설비자산액은 34,678,268천원임

라. 세입세출의 현금

- 전년도 이월액 ----- 75,479천원
- 당해연도 수입액 ----- 125,409천원
- 당해연도 지출액 ----- 71,044천원
- 2002년말 현재액 ----- 129,844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조문

(1) 지방공기업법 제35조 (결산)

- ② 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(정례회의 집회일등)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나. 기 타 ----- 불 입

-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
-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